

[국립공원관리공단 채용 직무 설명자료 : 토목(6급)]

채용 분야	토목	분류 체계	대분류	14.건설		
			중분류	01.건설공사관리		02. 토목
			소분류	01.건설시공전관리	02.건설시공관리	01.토목설계·감리
			세분류	01.설계기획관리	04.건설공사공무관리	11.토목건설사업관리
능력 단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설계기획관리) 05.사업관리계획수립 06.설계단계 관리계획 수립 07.시공단계 관리계획수립 ○ (건설공사공무관리) 02.설계적정성 검토 04.계약 관리 ○ (토목건설사업관리) 08.안전·위험 관리 09.환경관리 					
직무 수행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설계기획관리) 건설공사의 체계적인 사업관리와 설계 품질확보를 위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요구조건 및 설계목표 등을 분석하여 건설공사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○ (건설공사공무관리) 건설공사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공사기획 및 계약, 공사현장의 운영, 설계변경, 기성관리, 견적업무, 공사비 및 공사자원관리, 준공 후 사후관리 등 성공적인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술적, 관리적 업무 ○ (토목건설사업관리)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공사가 진행되도록 관리 					
필요 지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설계기획관리) 건설관련법 및 지침, 설계분야별 업무범위, 설계절차·인허가 규정·설계승인절차, 사업지의 지형적 특성 및 주민요구사항 등에 관한 지식, 구조물 형식의 적정성·구조계산 검토, 공법 및 자재의 적합성을 파악, 공사기간·공정관리·조달관리, 적용 자재 기준, 설계의 시공 연계 검토 ○ (건설공사공무관리)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, 각종 시방서 및 설계기준, 건설공사 표준품셈 산출근거, 계약 업무지침, 계약금액 조정업무 처리절차 ○ (토목건설사업관리) 건설기술진흥법, 산업안전보건법,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, 환경영향조사법 					
필요 기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설계기획관리) 각 설계단계별 업무조정, 설계절차 및 인허가 단계에 따른 일정계획,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분석, 건설관련 법령의 해석 및 응용능력, 각 분야의 설계절차를 관리, 과업지시서의 분석 및 해석능력, 각 공종별 기술검토 능력, 도면 및 설계도서 검토, 공사의 난이도·리스크 파악, 설계오류·간섭·누락 등을 검토할 수 있는 기술 ○ (건설공사공무관리) 워드프로세서·스프레드시트·카드 S/W 등의 응용 기술, 협약서 작성, 공정의 우선순위 및 소요일수 파악, 건설장비의 작업능력 및 장비조합에 의한 공정추진 계획수립 능력, 영문서 작성 능력, 영어독해능력 ○ (토목건설사업관리) 안전점검, 안전진단, 안전보건교육의 실시능력, 현장별 유해·위험 작업요소의 확인능력, 환경시설에 대한 점검실시 능력 					
직무 수행 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설계기획관리)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일정계획을 수립하려는 태도, 과업전반을 이해하고 성공적인 과업수행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려는 태도, 최신 법령 및 기준을 항상 숙지하고 적용하려는 태도, 합리적인 표준업무절차 작성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, 사업관리기술을 향상시키려는 태도, 시공전 설계오류를 최소화 하고 완벽한 설계를 추구하려는 의지, 각 설계자와 시공자간의 원활한 의견조정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 ○ (건설공사공무관리) 설계서를 면밀히 분석하려는 태도, 유사공정의 시공 경험을 참조하려는 태도, 					

	<p>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하는 미래지향적인 태도, 비합리적인 관습과 타성에서 탈피한 기준이나 수치 등에 근거한 명확하고 책임 있는 관리 이행태도</p> <p>○ (토목건설사업관리) 재난발생 방지 의지, 세밀한 안전진담, 점검·확인하려는 태도, 시공 단계별 친환경 관리에 위한 노력</p>
직무 수행 능력 시험 과목	토목학
직업 기초 능력	기술능력, 문제해결능력, 수리능력, 의사소통능력, 정보능력
참고 사이트	○ www.ncs.go.kr

※ 본 직무수행 내용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고유직무를 반영하여 NCS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.